아마 실수였던

것 같아요

조세 사면
3월 31일 마감

Tax Amnesty - Korean

주 형평국
(State Board of Equalization)

조세 사면
신청 기간: 2005년 2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

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. 그러나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과거에 판매세나 소비세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면 바로 지금이 형평국의 판매세 및 소비세 사면 제도를 이용하여 이러한 실수를 바로 잡을 기회입니다.

지정된 세무 신고를 하고 연체 세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하면 상당한 벌칙금과 형사 처벌 가능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.

판매세 및 소비세 사면이란?

본 사면 제도는 보고하지 않은 판매세 및 소비세를 보고하여 납부하거나 보고는 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세금 부담액을 납부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. 사면 제도를 이용하면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른 형사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세금 부담액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.

모든 사면 요구 기준을 충족하면 사면 보고 기간 동안 벌칙금을 받지 않게 됩니다.

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습니까?

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세무 보고 기간에 대해 판매세 및 소비세 사면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.

- 이전의 세무 신고서에서 매출 또는 매입을 적게 보고한 경우

-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세 대상 매출 또는 매입에 대한 세금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
- 기존 세금 부담액이 있는 경우

어떤 사람이 자격이 없습니까?

현재 형사 수사 대상이거나 2005년 2월 1일 기준으로 법정 소송 절차의 대상인 경우에는 판매세 및 소비세 사면 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사면 자격은 있지만 참여하지 않을 경우 또는 참여는 하지만 세금 부담액을 적게 말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?

2005년 4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새로운 실질적인 벌칙금을 받게 됩니다. 이 경우 정상 세율의 2배로 부과되는 벌칙금과 이자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비용이 청구됩니다. 자세한 정보는 *www.taxes.ca.gov*를 방문하거나 형평성 위원회 (Board of Equalization) 정보 센터, 800-400-7115로 연락하십시오.

언제 어떻게 지원합니까?

사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서명하여 판매세 및 소비세 사면 기간 중 형평성 위원회(Board of Equalization)로 제출하십시오. 사면 기간은 2005년 2월 1일에 시작하여 2005년 3월 31일에 마감됩니다.

신청서는 2005년 1월 15일까지 다음 교부처를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.

- 인터넷 *www.taxes.ca.gov*
- 팩스 교부 800-400-7115 (자동 서비스 선택)
- 정보 센터 800-400-7115
- 우편 Board of Equalization, Tax Amnesty Program (MIC:95), PO Box 942879, Sacramento, CA 94279-0095로 발송하십시오. (판매세 및 소비세 사면 신청서를 요청해야 합니다.)
- 현지 사무소 형평성 위원회(Board of Equalization) 현지 사무소를 방문하십시오. (전화 번호부의 정부 기관 페이지에서 캘리포니아주 형평성 위원회 (Board of Equalization) 를 찾아보십시오.)

판매세 및 소비세 사면 제도에는 어떻게 참여합니까?

- 2005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십시오.
- 2005년 3월 31일까지 지정된 모든 세무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.
- 2005년 3월 31일까지 세금과 이자 전액을 납부하십시오. (이 때까지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.)

사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?

신청할 수 없습니다. 사면 신청서는 2005년 3월 31일까지 입니다.

사면 기간 중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무 신고를 한 다음 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까?

그렇습니다. 하지만 지정된 세무 신고를 마친 후 2005년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.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.

이미 납부한 벌칙금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까?

없습니다. 이미 납부한 벌칙금은 상환 받을 수 없습니다.

파산한 경우 판매세 및 소비세 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?

그렇습니다. 그러나 현재 파산 상태인 경우 연방 파산 법원의 사면 제도 참여 승인 명령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. 그 다음 법원의 승인 명령과 사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지원 센터

인터넷
www.taxes.ca.gov

형평국 (Board of Equalization)
정보 센터
800-400-7115

청각 장애인용
800-735-2929

납세자 권리 보호소
888-324-2798

소득세 또는 법인세

형평성 위원회의 판매세 및 소비세 사면 제도가 소득세 위원회 (Franchise Tax Board) 에 의해 관리되는 사면 제도와 비슷하긴 하지만 일부 차이점이 있습니다. 소득세 및 법인세 사면 관련 정보는 www.taxes.ca.gov 를 참조하십시오.